**<별첨자료>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예, 아니오에 란에 간단하게 ○로 기입해 주시길 바라고 확인란에 확인자를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자 :

|  |  |  |  |
| --- | --- | --- | --- |
| **NO** | **확 인 사 항** | **예** | **아니오** |
| 1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신가요? |  |  |
| 2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법적배우자가 있으신가요? |  |  |
| 3 |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으신가요? |  |  |
| 4 | 3번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고 다음의 항목에 대한 추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은 경우 확인이 가능하오니 관련 영수증을 제출바라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60세이상(1960.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00.1.1.이후 출생),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현황>   |  |  |  |  |  | | --- | --- | --- | --- | --- | | 관계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소득금액 요건\*1을 충족합니까?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1.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50만원)임 |  |  |
| 5 |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  |  |
| 6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까? |  |  |
| 7 | 부양가족 중 기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권자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NO** | **확 인 사 항** | **예** | **아니오** |
| 8 | 부양가족 중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위탁아동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  |  |
| 9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자료가 있습니까?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에 동의를 한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가 출력가능하니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바라며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도 공제가 가능하오니 해당 되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관계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4번 항목에서 기재한 경우라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 | --- | --- | --- | | 관계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제공기간 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했습니까? |  |  |
| 11 |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가능하고,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입니까?  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 |  |  |
|  |  |
|  |  |
|  |  |
|  |  |
| 12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연도중 무주택이어야 함)  ② 2021.2.28.까지 금융기관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 참고로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하고 당첨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함.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오른쪽 란에 ‘공제불가’라고 기입바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 **확 인 사 항** | **예** | **아니오** |
| 13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하고, 세대주가 모든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까?  ④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이자\*1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1. 이자율은 근로자확인사항에서 확인하길 바람  ⑤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하신 경우에 해당 합니까? |  |  |
|  |  |
|  |  |
|  |  |
|  |  |
|  |  |
| 1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근로자 본인 것입니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시 등의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공제가능함)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입니까?  ③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④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까?(2014년 이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여부 상관없음)  ⑤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액을 말함)가 5억원 이하입니까?  ☞ 2014년∼2018년에 차입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4억원, 2013년 이전 차입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입니까?  ⑥ 2006.1.1.∼2013.12.31.까지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이후 세대 전원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하며, 2014.1.1.이후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됩니까?  ⑦ 2020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이 1채입니까?  ⑧ 차입금 잔액을 일시상환하였는지의 여부와 대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해당 합니까?  ⑨ 2020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의 가격이 5억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5억원 이하입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 | **확 인 사 항** | **예** | **아니오** |
| 15 | 교육비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국외유학비용 등과 관련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안내문 참고바람 |  |  |
| 16 | 의료비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와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참고로 난임시술비와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는 국세청 자료에 지출내역이 나오지만 해당 내역인지 알 수 없고 안경구입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에 나올 예정이지만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 지출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  |
| 17 | 기부금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중점확인 사항이니 주의바람.  ※ 법인설립허가서와 소속증명서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함  ※ 참고로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바람 |  |  |
| 18 | 기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란에 공제받고자 하는 연도를 기입해 주시길 바라고(예:2020년) 관련 서류 제출바랍니다. |  |  |
| 19 | 2020년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가 있나요?  ※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1년 5월에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바랍니다. |  |  |
| 20 | 연말정산 세액의 결과 추징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분납하여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분납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2개월 분납도 가능하므로 2개월 분납을 원하는 경우 별도 표기바람) |  |  |